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18. 2 . .
발 의 자	정근수의원 외 7명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근수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8. 2.

발 의 자 : 정근수·강승수·김상조·김인배·김정곤
박교상·안장환·윤종호 의원(8인)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및 읍·면·동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지정 요구를 반영하여 생활환경 보전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읍·면·동 축종별 제한구역을 변경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 지정(안 별표 1)

- 고아읍 7개리(신촌리, 황산리, 내예리, 외예리, 황산리, 예강리, 향곡리) 추가 지정

나. 상위 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게 읍·면지역에서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가축의 마릿수를 변경(안 제3조)

- 소 : 10마리 이하 → 8마리 이하

3. 조 례 안 : 붙임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소 : 8마리 이하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허가, 신고 및 그 밖의 행위(허가 및 신고의 신청 등)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1. 읍·면·동 축종별 제한구역

구 분	제 한 구 역	
	소(한우·육우), 젓소,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동지역	전지역	전지역
선산읍	교리,노상리,동부리,화조리, 이문리	교리,노상리,동부리,화조리, 완전리,이문리
고아읍	관심리,대망리,신촌리,황산리,횡산리, 외예리,내예리,원호리,문성리,향곡리, 예강리	관심리,이례리,오로리,대망리,신촌리,황산리, 횡산리,외예리,내예리,원호리,문성리,다식리, 괴평리,송림리,봉한리,향곡리,예강리
무을면	송삼리	송삼리,무등리,무수리
옥성면	주아리	주아리, 농소1리
도개면	궁기1리	궁기리
해평면	월호리	월호리,낙성리,오상리,괴곡리, 문량리,송곡리,해평리
산동면	적림리	동곡리, 도중리, 적림리, 신당리, 임천리, 인덕리, 봉산리
장천면	상장리	상장리,하장리

2. 축종별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제한거리

구 분	제 한 거 리	
소(한우·육우),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 말	400마리 미만	50m 이내
	400마리 이상	70m 이내
젓소	400마리 미만	75m 이내
	400마리 이상	110m 이내
돼지	1,000마리 미만	800m 이내
	1,000마리 이상 ~ 3,000마리 미만	1,000m 이내
	3,000마리 이상	1,200m 이내
닭(육계), 오리, 메추리	20,000마리 미만	250m 이내
	20,000마리 이상 ~ 50,000마리 미만	450m 이내
	50,000마리 이상	650m 이내
개	100마리 미만	1,000m 이내
	100마리 이상	1,500m 이내
닭(산란계 등)	20,000마리 미만	1,000m 이내
	20,000마리 이상 ~ 50,000마리 미만	1,300m 이내
	50,000마리 이상	1,500m 이내

3.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500m이내 지역(한우, 말 제외)

4.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

< 비고 >

1. “주거 밀집지역”은 가구간의 거리가 지적도 부지경계선에서 반경 100미터를 기준으로 5가구 이상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가구”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 수)을 기준으로 하며,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가구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전기, 수도시설 기준)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축종별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제한거리의 3배수를 적용한다.
※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3. “마리 수”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따른 축종별 마리당 축사면적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실제사육마리수를 기준으로 한다.
4. “거리”는 축사부지(예정지)경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거밀집지역의 가구부지 경계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상 직선거리로 산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① (생략)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②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읍·면지역에서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다음 각 목의 가축	4. ----- -----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u>라. 소 : 10마리 이하</u>	<u>라. 소 : 8마리 이하</u>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없이 설치되거나 변경된 배출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그 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사육을 위탁(이하 "위탁사육"이라 한다) 할 수 없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을 하는 경우 이전대상 시설 중 축사·처리시설 및 그 밖에 축사와 관련된 공작물 등(이하 "축사등"이라 한다)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이하 "이전비용"이라 한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축사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축사등을 당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축사등의 이전비용이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경우 축사등의 소유자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신고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